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3
----------	------

제출년월일 : 2005년 10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 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공시지 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기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공시지가의 100분의50 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신설 제27조의3)

3. 근거법령 : 지방세법(불임)

○지방세법 [법률 제7332호, 2005.1.5일부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2003.12.31일부개정]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첨부: 1. 입법예고 결과 1부

2.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현황 1부

3. 기타참고자료(준칙안) 1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3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3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p>제27조의3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p> <p>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 관계법령

지방세법

[법률 제7332호, 2005.1.5.일부개정]

第1章 總則

第7條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00213호, 2003.12.31일부개정]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입법예고 결과

★도세담당	세정과장				
박문수	전결 09/15 최한섭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05. 8. 23. ~ 2005. 9. 13. (21일간)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4. 개정조례안 요목
 - 준칙안 시달 : 충청북도 세정과-5248(2005.8.19)호
 - 주요내용 : 2기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공시지가의 100분의50 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신설 제27조의3)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 2005 - 515 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22 .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 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공시지 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2기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공시지가의 100분의50 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12 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2004년도~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현황

구 분	기준일	공 시 지 가 결정공시일자	총 필지수	직 전 년 도 대비상승률 (%)	전국평균 상승률(%)
2004년도	2004.1.1	2004.6.30	132,490	14.86	19.56
2005년도	2005.1.1	2005.5.31	133,318	19.22	18.90

* 2년 합계인상을 : 37 % (생활민원과-7049, 2005. 9. 16)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 송부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3069호(2005.08.18)의 이첨입니다.

2. 2005년도 개별공시자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2005.05.4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공시지가의 100분의50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5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취지의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제29조를 신설하여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4.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더01-12(세정업무관련과장)

★ 지방세무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5248 (2005.08.19.) 접수 세정과-@N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618 / 전송 043) 220-2619 / pjt1223@cb21.net / 공개

○○도 ○○시·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군 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률 조정 가능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